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9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6. 3. 5

제출자 : 달성군의회

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 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사항 반영
(안 제2조제2호~제3호)

나. 학교복합시설의 사용 허가·취소·사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
(안 제2조제4호, 제2조의2, 제2조의3, 별지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5조, 제6조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- (2) 입법예고(2026. 1. 30. ~ 2. 19.) 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2조제2호”를 “제2조제3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감독기관장등”이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4. “사용료”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대관료 또는 이용료를 말한다.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명칭 및 위치) 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제2조의3(사용허가 등) ① 학교복합시설을 사용(변경 및 철회 포함)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해당 학교의 교과 시간 내 시설의 사용
2.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
- ②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,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-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

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계 법령,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
2.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
3.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4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5.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6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
7.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2. 사용자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반환 기준은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다.

제3조제1항 중 “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”를 “군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 중 “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(이하 “감독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감독

기관장등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감독기관의 장”을

각각 “감독기관장등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단서 중 “감독기관의 장”을 “감독기관장등”으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학교복합시설의 명칭, 위치(제2조의2 관련)

명 칭		위 치	관리기관
화원초 학교복합시설	공중화장실	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17번지 일원	교육정책과
	화원 천내 체육시설		
달성이룸캠프		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곡리 261번지 일원	교육정책과

[별표 2]

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

구 분	사용구분		체육경기		체육경기외	
			평 일	토·공휴일	평 일	토·공휴일
회원 천내 체육시설	풋살장 (인조잔디)	주간 (1시간)	-	50,000	-	-
		야간 (1시간)	-	-	-	-
비 고	1. 전용 사용 시간은 주간(09:00~18:00)으로 함. 2.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·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%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. 3. 군(위탁기관 포함)에 등록된 군(민)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·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%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. 4.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(증빙서류)을 사용허가 신청시 제시하여야 함.					

[별표 3]

사용료의 감면

구 분	감면율 (할인율)	비고
국가나 대구광역시,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	전액면제	
달성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	80%	
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	80%이내	
「스포츠클럽법」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	50%	
「스포츠클럽법」 제6조에 따른 등록스포츠클럽	30%	

[별표 4]

사용료 반환기준

구 분	이용요금	반환금액
시설 사용료	사용예정일 5일 전	전액 반환
	사용예정일 4일 전 ~ 1일 전	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
	사용일	반환하지 않음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학교복합시설”이란 「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제2조제3호 ----- -----.</p> <p>3. “<u>감독기관장등</u>”이란 「<u>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</p> <p>4. “<u>사용료</u>”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<u>대관료 또는 이용료</u>를 말한다.</p> <p>제2조의2(명칭 및 위치) <u>학교복합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</u></p> <p>제2조의3(사용허가 등) ① <u>학교복합시설을 사용(변경 및 철회 포함)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사용자”라 한다)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</u></p>

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해당 학교의 교과 시간 내 시설의 사용

2.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된 교과과정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

② 군수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,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관계 법령,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

2.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한 경우

3.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
4.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
5. 해당 학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

6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

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

7.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
④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군수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제3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

2. 사용자와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이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신청 또는 환불을 요구할 경우 별표 4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

3.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반환 기준은 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 및 「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학교 및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~ ③ (생략)

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(이하 “감독기관의 장”이라 한다)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데 동의한 경우
2.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학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군수-----

-----.

② ~ ③ (현행과 같음)

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-

-----.

1. 감독기관장등-----

2. 감독기관장등-----

② ----- 감독기관장등-----

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)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.

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) ① -----

-----.

----- 감독기관장등--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 령

□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범죄, 안전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복합시설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경우

2. 감독기관장등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장등은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학교복합시설의 기획, 설계 및 공사 등의 건축은 각 항의 설치 주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,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은 증축·개축, 리모델링 등 건축방식, 재정 분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,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주체와 협의하여 정한다.

⑤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에 따른다.

⑥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조(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 원칙)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,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자(이하 “운영관리자”라 한다)를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② 운영관리자는 학생, 학부모,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③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·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,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관리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